

예산총칙

제1조 : 2025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한도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 : 천원)

회 계 별		세입·세출 예산총액	일시차입 한도액
계		969,771,188	29,093,136
1.	일반회계	955,212,332	28,656,370
2.	특별회계	14,558,856	436,766
	의료급여기금	1,300,730	39,022
	주차장	9,803,714	294,111
	주거환경개선사업	64,864	1,946
	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	307,719	9,232
	지하수관리	107,087	3,213
	화력발전지역개발	2,974,742	89,242

제2조 : 세입·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"세입·세출예산"과 같다.

제3조 : 채무부담행위사업은 없음.

제4조 : 계속비사업은 없음.

제5조 :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23,000,000천원이다.

제6조 : 일반회계 일반예비비는 926,654천원으로 한다.

제7조 :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, 재무활동 경비, 재해대책 및 복구비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.